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05
------	------

제출일자 : 2024. 4.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4. 7월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이 준공 예정에 있어 키즈카페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 수	비 고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	금천구 시흥대로45길 34 양문교회 비전센터 2층	연면적 190.47㎡	3명	24. 6월 준공 24. 7월 개관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금천구 1호점(가칭)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 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라) 사업관리 : 놀이 공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 특화 사업 관리 등
- 마) 물품 등 기타관리 : 물품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 3)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4) 운 영 비 : 77,820천원(시비:42,534천원, 구비:35,286천원)

※ 2024년 7월~12월분 예산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가. 영유아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연령별·성별 특성을 파악하여 놀이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해당
- 나. 놀이공간과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아동의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경험 많은 민간의 운영기관 필요

4. 관계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관 련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 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놀이터의 수탁 운영을 원하는 기관에서 조성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